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의안번호	2189
------	------

제출일자 : 2022. 3. 17.
제출자 :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1.13.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 1) 입법예고(2022. 1. 1. ~ 2022. 1. 21.) 결과: 별도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나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u>동장의</u>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동장이</u> <u>위촉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u> <u>하여야 한다.</u>
1. ~ 2. (생략) ③ (생략) ④ <u>구청장이나 동장은 다음과 같은</u>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동장-----</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연락처

현 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20. 3. 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통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23>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개정 2013.5.10>

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신설 2004.06.30, 2010.11.23, 2020.3.25.>

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4.06.30, 2010.11.23>

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4.06.30, 2010.11.23>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06.30, 2007.05.23, 2010.11.23, 2020.3.25.>

②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새로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 전 사직하거나 1개월 이상 신규 위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신설 2020.3.25.>

③ 통장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분기별 위촉하되, 필요 시 매월 1일자로 한다.<신설 2020.3.25.>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05.23, 2010.11.23><개정 2013.5.10>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개정 2001.05.09, 2004.06.30, 2010.11.23, 2013.5.10, 2020.3.25>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0.11.23>

3. 삵제 <2004.06.30>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23, 2020.3.25>

④ 구청장이나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3>

1. 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개정 2010.11.23>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개정 2010.11.23>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0.11.23>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개정 2010.11.23>

5의2. 구 시책과 구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신설 2013.5.10>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0.11.23>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09.22, 2000.12.16, 2004.06.30, 2020.3.25>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23>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개정 2010.11.23>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개정 2010.11.23>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ガ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

<개정 2004.06.30, 2010.11.23, 2017.1.4.>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개정 2004.06.30, 2010.11.23>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개정 2010.11.23>
 6. 보안등, 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개정 2010.11.23>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개정 2010.11.23>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개정 2010.11.23>
 9.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개정 2010.11.23>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개정 2010.11.23>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개정 2010.11.23>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개정 2010.11.23>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1.23>
-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23>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3.25>

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1.23><개정 2020.3.25>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0.11.23><개정 2013.5.10>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개정 2010.11.23, 2020.3.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0.11.23>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0.12.16, 2010.11.23>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11.23>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3.5.10>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2017.1.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23>

③ 통·반장에게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신설 2004.6.30><개정 2007.05.23, 2010.11.23>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호, 199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 1999.09.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임기관란의 “동장”을 각각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은 제외)”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중 “한 한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동사무소”를 “동사무소 (단, 시흥1동사무소는 제외)”로,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동장”으로 한다.

④에서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 2004.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통장의 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1943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한다.

부칙 (제495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 2009.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 201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 20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